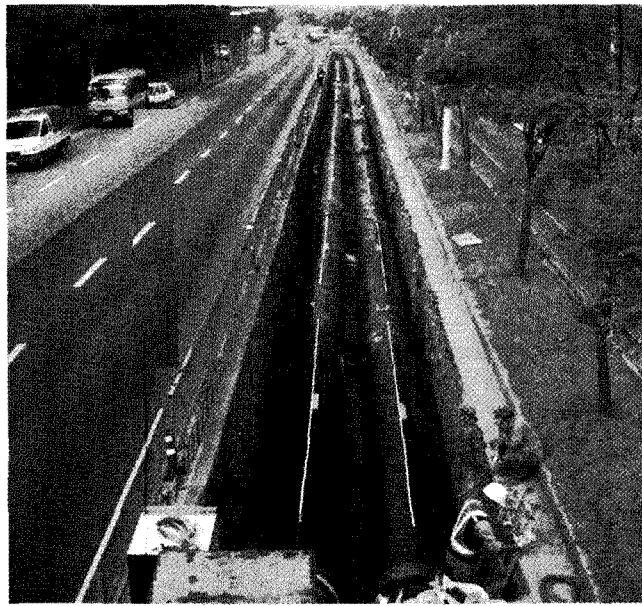


한국지역난방공사, 300억 미만 열배관공사 기계설비공사업체에 발주 확대 시행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1월부터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300억원 미만 열배관공사는 기계설비건설업체에 직접 발주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공사업인 열배관공사의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홍보한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1월부터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여 발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열배관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계 요로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배관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강력히 대응했다.[편집자 주]

대한설비건설협회, 열배관공사 기계설비공사업 으로 분리발주 확대 추진 및 발주방법 개선 노력

대한건설협회는 ‘열배관공사’는 최소 4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공종별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만큼 종합건설업자의 업무범위라고 주장하며 “올 1월부터 300억원까지 전문

공사로 확대되면서 종합건설업계의 업역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건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체로 발주된 50억원 이상 열배관공사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며 공사비도 1건당 약 180억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건협이 180억원의 공사마저 가져가겠다는 주장에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싸늘한 반응이다.

종합건설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계가 ‘욕심을 너무 부린다’며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체 보다 일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계의 조그만 영역 까지 침범하려 든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열배관 공사를 직접 시공했던 모 업체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여년간 전문건설업체에 열배관 공사를 발주한 것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부대공사인 토공사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한다는 건협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열배관공사는 설계도서가 분리되어 있고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0여년간 분리발주 확대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열배관공사가 분리발주되고 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원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정가격 상향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열배관공사는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지난 25년간 기계설비공사업자의 축적된 기술력과 성실시공으로도 충분히 열배관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끊임없는 건의와 함께 홍보에 주력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원가절감 등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기계설비업체가 원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배관공사 규모를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난 25년간 기계설비업체에 발주해도 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가 다시 기계설비업체에 하도급 주는 과정이 생략되어 일처리에 수월하다는 판단 하에 기계설비업체에 분리발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건설신문이 열배관공사에 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주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답변을 게재했다. 한국건설신문은 결론적으로 열배관공사를 기계설비업체 발주하는 방식이 법적·시공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한 셈이 됐다.

한국건설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건설신문 5월 12일자

300억 ↓ 열배관 공사 '전문공사업' 발주 논란 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혁신도시 열배관공사' 전문 발주 문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월 23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열배관공사'(추정가격 10,202,775 천원)를 전문공사업으로 발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의혹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열배관공사'의 입찰에 5천400여 기계설비공사업자 중 15개사만이 참여, 이중 7개사가 낙찰 하한을 이상으로 투찰하여 적격심사대상이 됐으나, 적격 실시결과 모든 업체가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총족치 못해 유찰되어 입찰재공고(4월 7일) 했다.

추정가격이 102억원 공사에서 이 같이 심사요건을 총족치 못하여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보다 규모가 큰 200~300억원대의 공사를 전문 공사로 발주할 경우 일부 극소수의 전문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특혜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건협은 우려했다.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 지역난방공사가 올해 1월 300억원 미만의 열배관공사를 무조건 전문 공사업으로 발주토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으로 건설협회는 설명했다.

'열배관공사'는 최소 4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공종별 시공간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만큼 종합건설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된다.

즉, 토공사(흙막이 벽체 포함),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기계설비공사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토공사의 경우 단순 터파기

공사가 아니라 전토면의 붕괴 방지를 위해 흙막이 벽체를 시공해야 하는 등 시공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복합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으로 제한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범위 규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시공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없다고 명백히 나타나 있다.

또 건협은 기계설비업자가 흙막이벽체 등을 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정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보더라도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등에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토공사·포장공사·구조물공사 등 완전히 다른 내용의 복합공사로 구성된 열배관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도 명시돼 있다.

만약 토공사를 토공사업자 등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 시공한다면 '열배관공사'를 종합건설업자에게 발주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또 다른 논란이 재기될 수 있다.

건설협회는 열배관공사를 발주할 경우 단순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전문공사 여부를 구분하지 말고 공사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신문 5월 23일자

지역난방공사, 열배관공사 '전문' 발주 강력의지

대부분 주된 공사는 '배관공사' 기술적 난이도 없다 해명

지난호(483호)에 본지가 보도한 [300억원 미만 열배관공사 '전문공사업' 발주 논란-대한건설협회 이의 제기]과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문 공사'로 발주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추정가격 102억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열배관공사' 전문공사 발주가 유찰된 것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1차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대비**에 달해 이례적으로 예측 범위를 벗어나 낙찰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예비가격기초금액 -5%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금액 미공개)을 산정하면 각 입찰자가 2개씩 선정한 후 선택회수 상위 4개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하여 산정함
**일반적으로 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약 97%선에서 예정가격이 형성)

건협이 제기한 '소수 대형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소지'와 관련 지역난방공사는 소수 대형 전문건설업체 독점 방지를 위해 50억원 이상 열배관공사의 겨우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을 의무화했으며, 공동 수급체 최소 지분율도 30% 이상으로 유지하여 여러 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열배관공사 입찰에는 대부분 시공능력 상위 일부 종합건설업체(약 20여개)만 참여했는데 낙찰된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우리공사 열배관공사 관련 조직 및 인력 미확보 상태로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사(전문) 기술자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체로 발주된 지역난방공사의 열배관공사(50억원 이상)는 연평균 2건(공사비 1

건당 약 180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협이 제기한 '300억원 미만은 전문공사로, 300억원 이상은 종합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것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기술적인 공사내용을 설명하며 기계설비공사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즉 열배관공사는 집단에너지공급에 필요한 열배관을 지중(깊이 약 1~2m)에 매설하는 공사로, 타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하도급업체 운용으로 종합건설업체의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1구간(약200m)에 터파기-배관공사-되메움의 단순공종이 반복되는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른 시공 난이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발주방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범위 규정 위반'(복합공사)과 관련 지역난방공사는 열배관공사는 '열배관설비의 조립·설치'를 목적으로 배관공사를 주된공사로 기타공사(토공, 포장, 구조물 등) 부대공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주된 '광주전남 열배관공사'의 경우 순공사비에서 배관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2%에 달하며 토공사 14.7%, 포장공 0.4%, 구조물공 12%, 가설공 4.7%, 기타 6%라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열배관공사는 지난 20여년간 공사 수행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본지 483호 ‘건설협회 일반발주 요구’ 반대주장〉

지역난방공사, 열배관공사 ‘전문’ 발주 강력의지

대부분 주된공사는 ‘배관공사’ 기술적 난이도 없다 해명

지난호(483호)에 본지가 보도한 [300억 원 미만 열배관공사 전문공사업체] 발주 논란 대안건설협회 이의 제기과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문 공사’로 밀주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주장가격 102억 원 ‘광주전남광동 혁신도시 열배관공사’ 전문공사 발주가 유찰된 것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1차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내비) **에 달해 아래적으로 예측 범위를 벗어나 낙찰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예비가격기초금액 -5%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금액 미공개)을 신청하면 각 입찰자가 2개 쪽 선정한 후 선택회수 상위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일반적으로 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약 97%선에서 예정가격이 형성) 건협이 제기한 ‘소수 대형 전문건

설업체를 위한 특혜소지’와 관련 지역난방공사는 소수 대형 전문건설업체 독점 방지를 위해 50억 원 이상 열배관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을 의무화했으며, 공동수급제 최소 자본율도 30% 이상으로 유지하여 여러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열배관공사 입찰에는 대부분 시공능력상위 일부 종합건설업체 약 20여 개만 참여했는데 낙찰된 종합건설업체의 경 우 우리공사 열배관공 및 인력 미화보 상태로의 공사를 하도급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종합건설 지역난방공사의 (50억 원 이상) 연평균 건당 약 180억 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건협이 제기한 ‘300억 원 미만은 전문공사로 300억 원 이상은 종합공사로 구분하여 밀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것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기술적인 공사내용을 설명하며 기계설비공사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즉 열배관공사는 집단에너지공급에 필요한 열매관을 지름(깊이 약 1~2m)에 매설하는 공사로 타공사에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별 위 규정 위반’(복합공사)과 관련 지역난방공사는 열배관공사는 ‘열배관 설비의 조립·설치’를 목적으로 배관공사를 주된공사로 기타공사(토공, 포장, 구조물 등)부대공사로 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밀주된 ‘광주전남 열배관공사’의 경우 순공사비에서 배관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2.2%에 달하며 토공사 14.7%, 포장공 0.4%, 구조물 12%, 가설공 4.7%, 기타 9.3%라고

300억 ↓ 열배관 공사 ‘전문공사업’ 발주 논란

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혁신도시 열배관공사’ 전문 발주 문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월 23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열배관공사(주장가격 102,277.75 천원)를 전문공사업으로 밀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의혹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열배관공사’의 입찰에 5천 400여 기계설비공사업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특혜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건협은 우려했다.

이러한 특혜논란에 대해 지역난방공사가 올해 1월 300억 원 미만의 열배관공사를 무조건 전문공사업으로 밀주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건설협회는 철명했다.

‘열배관공사’는 최소 4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공동별 시공간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만큼 종합건설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된다.

즉, 토공사(흙마이벽체 포함),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기계설비공사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토공사의 경우 단순 터파기 공사가 아니라 절토면의 봉괴 방지와 흙막이 벽체를 시공해야 하는 등 사공

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복합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체로 제한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별 위반 규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사용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혀졌다.

또 건협은 기계설비업체가 흙마이벽체 등을 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정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보더라도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등에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덕수 기자 ks@

1면에 이어서

따라서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토공사·포장공사·구조물공사 등 완전히 다른 내용의 복합공사로 구성된 열배관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도 명시돼 있다.

만약 토공사를 토공사업자 등에게 다시 하도급주어 시공한다면 열배관공사를 종합건설업체

에게 밀주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또 다른 논란이 재기될 수 있다.

건설협회는 열배관공사를 밀주할 경우 단순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전문공사 여부를 구분하지 말고 공사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밀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수 기자 ks@